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크로 등을 사용한 부정한 조작 행위 금지〉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5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부정한 조작 금지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8. 5.

다. 회 부 일 : 2026.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

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부정한 조작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도용하여 거짓 정보 또는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를 대행·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8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u>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 보통신서비스의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2. 대가 지급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여·양수하거 나 도용하여 거짓 정보나 조작 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확한 조 작 방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2조(벌칙)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하 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행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 <u>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검토의견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위 매크로라고 불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구매·도용한 대리계정 등을 이용하여 포털의 검색순위나 온라인 쇼핑몰 및 SNS의 조회수·추천수,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형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짓 정보 게시 등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법」 제314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¹⁾이고 조작수·추천수 허위 조작 행위 등도 이에 해당²⁾하나,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³⁾하나,

같은 법 제16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⁴⁾.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2) 대법원 관례(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에서는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4호는 타인의 명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규정⁵⁾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도용하여 거짓 정보 또는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이하 “부정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대행·중개하거나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하여 부정 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것임.
-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부정 조작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내에서 부정 조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부정 조작 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가 아닌 이를 대행·중개하거나 프로그램·대리 계정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부정 조작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부정 조작 행위를 한 자보다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직접 부정 조작 행위를 한 자를 「형법」 제3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나,

안 제48조의11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처벌은 부정 조작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부정 조작 행위를 한 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이를 대행·중개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와 함께, 개정안과 같이 부정 조작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만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8조의11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문언상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8조의11제3항에 따른 ‘부정한 조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하여 부정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하여야 하는지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안 제48조의11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부정 조작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크로 및 자동화 프로그램이 프록시 IP분산⁶⁾, 인공지능 기반의 인간 입력 패턴 모방 등 정교한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사전적·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지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설명임.
- 따라서, 부정 조작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프록시 IP분산이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여러 개의 중간 서버(프록시)를 거쳐서 접속 IP를 계속 바꾸는 것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용

- 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 및 그 대행·중개 금지 및 벌칙규정을 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한 조작방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중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정보통신망법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등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고

관련 업계에서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부정 조작 방지 의무 이행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사전 규제의 형식을 띠므로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형법」 제314조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는 이미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신중검토

- 수범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범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 의무 규정을 신설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수범자에게 이행이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8